기 안 용 지
(725.－3001)

분류기호 문서번호	시민 1740－ 1010	전결규정 4조 1항 개장 전결사항	
처리기간	84. 3. 30		
시행일자	84. 3. 28		
보존년한	5 년		
보조기관	민원1계장 전결	협조	
기안책임자	이보규	최현창	
경유		발신	시장
수신	각 안 참 조		
참조			
제목	공연자 등록사항변경등록 신청서 처리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제목 동건

1. 관내 [redacted] 동 [redacted] 호 거주 기죽서 로부터 별첨과 같이 공연자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이 있어 공연법 제3조 및 동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처리하고 각안 시행코자 합니다

가. 변경내용

신청인	공연자명칭	극단 "76극장"	대표자	기죽서
	소재지	도봉구 수유동 127－13		
	등록번호	1－230	등록년월일	79. 9. 7
변경내용		구		신
소재지		서대문구 대현동 101－1		도봉구 수유동 127－13
[redacted]		[redacted]		[redacted]

정서

관인

발송

나。 변경사유 : [redacted]

다。 변경등록년월일 : 84. 3. 28 끝。

(제2안)

수신 서울특별시 [redacted] 구 [redacted] 동 [redacted] 지 [redacted] 호

기국서

제목 동건

1。 귀하가 1984。3。28。당시에 제출한 공연자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은 처리되었기 통보하오니 등록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끝。

(제3안)

수신 문화과장

제목 동건

1。 관내 [redacted] 구 [redacted] 동 [redacted] 지 [redacted] 호 거주 기국서 로부터 공연자등록사항변경등록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 처리되었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가。 변경내용

(제1안 "가―다"항 이기시행)

(별지제3호서식)

공연자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공연자명칭	극단 76 극장		
	②소재지	서울도봉구 수유4동 127-13 (전화번호: 993-6383)		
	대표자 ③성명	기국서	④주민등록번호	[redacted]
	대표자 ⑤주소	[redacted]		
⑥등록번호		제 1-230 호		
⑦변경내용		[redacted]		
⑧변경사유		이사.		

공연법 제3조 및 동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1984년 3월 일

신청인 奇國叙 ㊞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연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직결민원처리인	접수일자	서울특별시 1984. 3. 28	결재	
	접수번호	17	처리자	
	교부번호		처리기간	



3202-72B(1)
82.11.13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0137

要 1. 소재지(주소) 변경 보완.

0133

〔별지 제4호서식〕

공연자등록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공연자명칭		극단 76극장	②등록번호	제 1-230 호 (79.9.7)
	③소 재 지		서울 도봉구 수유4동 127-13		
	대표자	④성 명	(기국서) 奇國叙	⑤주민등록번호	[redacted]
		⑥주 소	[redacted]		
⑦재 교 부 사 유			[redacted]	공연물종류 / 연극	예술구역 / 전국

공연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1984년 2월 21일

신청인 奇國叙 ㊞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접수	서울특별시 ('84. 3. 26)	결재
접수번호	17	처리자
교부번호		처리기간

구비서류

공연자 등록증(공연자 등록증을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이면 참조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3202-73B(1)
82.11.13 승인

190
(신문용지 54 g/㎡)

공연자등록증재교부안내및예고서

접수창구번호	처리기간	대조공부	비치대장	관계법규	준비사항
시 민 과 제 21 창구	1 일	등록대장	등록대장	공연법제5조및 동법시행령제5조	수 수 료 증지200원
처리과정도표	접수→검토→등록대장대조→성안→통제→관인→교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1. 공연자 등록증을 분실또는 정당한 사유로 재교부받고자 할경우 분실 또는 기타 사유가 발생하였을시 사유발생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재교부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또한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 아래서식에 의거 그사유서를 작성날인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분실) 멸실 사유서

본적 : [redacted]

주소 : [redacted]

성명 : 기 국 서 주민등록번호 : [redacted]

사유 : (6 하원칙에 의거기재)

본인이 대표로 있는 [redacted]

1983년 11월 [redacted]

[redacted]

상기 기재사실은 사실과 상위없으며 로 인한 일체의 법적책임은 본인이 질것이며 차후 분실된 등록증을 회수한때는 지체없이 반환할것을 서약함.

19 84. 2. 21. 성명 기국서. ㊞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